자가품질검사 주기표 체크리스트 (식품제조·가공업)

글 전용: 「자가품질검사 주기, 우리 품목은 몇 개월인가」 · 10분 · 1장
작성 2026-10-30 · 기준: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검사기준(현행, 2026-09-01 개정) · 주기값은 원문 그대로 · 원문: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

1. 우리 품목 줄 찾기 (해당 줄 1개 체크)

- [] **3개월마다 1회 이상** — 과자류·빵류 또는 떡류(과자·캔디류·추잉껌·떡류만) · 코코아가공품류 · 초콜릿류 · 잼류 · 당류 · 음료류(다류·커피류만) · 절임류·조림류 · 수산가공식품류(젓갈류·건포류·조미김·기타 수산물가공품만) · 두부류·묵류 · 면류 · 조미식품(고춧가루·실고추·향신료가공품·식염만) · 즉석식품류(만두류·즉석섭취식품·즉석조리식품만) · 장류 · 농산가공식품류(전분류·밀가루·곡류가공품·두류가공품·서류가공품·기타 농산가공품만) · 식용유지가공품(모조치즈·식물성크림·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) · 동물성가공식품류(추출가공식품만) · 기타가공품 · 선박에서 통·병조림 제조 · 단순가공품
- [] **2개월마다 1회 이상** — 빵류 · 식육함유가공품 · 알함유가공품 · 동물성가공식품류(기타식육·기타알제품) · 음료류(과일·채소류음료·탄산음료류·두유류·발효음료류·인삼·홍삼음료·기타음료만, 비가열음료 제외) · 식용유지류(들기름·추출들깨유만)
- [] **1개월마다 1회 이상** — 위 두 줄에 없는 식품(주류는 **6개월마다 1회 이상**)
- [] **6개월마다 1회 이상(동일 재질별)** — 자사 제품용으로 수입한 용기·포장
- [] 빵은 2개월 줄이다 — 3개월 줄의 "빵류"는 과자·캔디류·추잉껌·떡류만 해당. 애매하면 관할·인증원에 품목명으로 확인했다

2. 주기 셀 때 (4)

- [] 기산일 = **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**(달력 1일 아님). 수입 용기·포장은 세관 신고필증 발급일
- [] 품목별로 실시한다. 식품공전상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품목만 식품유형별로 묶는다
- [] 식중독 위험 지정·고시 기간엔 당긴다: 3개월 줄(및 수입 용기·포장) → **1개월** / 2개월 줄 → **15일** / 1개월 줄 → **1주일**
- [] 남에게 제조를 맡기면 맡긴 쪽과 직접 제조하는 쪽 중 누가 하는지 정해 적었다

3. 기록 (5)

- [] 품목마다 기산일·다음 예정일이 한 장에 있다
- [] 검사 건마다 일자·품목·검사항목·결과·조치가 한 줄로 이어진다
- [] 검사한 제품의 생산 기록(로트·생산일자)과 묶여 있다 — 최종 확인검사 때 "같은 날·같은 시설·같은 공정" 증명용
- [] 특정 식품첨가물을 안 써서 생략한 항목은 생략 사유를 적었다
- [] 검사 기록서 **2년 보관** — 2년 치가 바로 꺼내진다

4. 부적합이 나오면 (4)

- [] 확인검사 요청 시 관할에 보고: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+ 확인검사 의뢰서 첨부
- [] 확인검사 제외 항목 **5종**: 이물·미생물·곰팡이독소·잔류농약·잔류동물용의약품 — 이 항목은 확인검사로 다툴 수 없다
- [] 최종 확인검사는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**60일 이내** 신청, 지방식약청장이 **20일 이내** 완료
- [] 면제: 조사·평가 결과 **만점의 90퍼센트 이상**이면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— 점수는 식약처·인증원이 매긴다

FOOD Ai (K-HACCP) · 1833-9612 · 주식회사 푸드에이아이